

개인 정보 보호

I. 개인정보의 이해

1. 개인정보의 개념과 의미

1-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1-2. 개인정보의 정의

» 국내 법률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것을 포함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 • •
조도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1-3. 혼자 있을 권리(소극적 의미)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 이론은 1890년 미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워렌(Warren)과 루이스 D 브랜다이스(Brandeis)가 프라이버시를 개념화 했을 때 썼던 말로 ‘혼자 있을 권리’로 출발하였다.

1-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적극적 의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자기정보 통제권’ 등 여러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뜻은 ‘자신과 관계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2. 개인정보의 유형

2-1. 산출자 정보

개인이 해당 정보의 생성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정보.

예) 전화통화, 이메일 주소, 게시판 등록글 등

2-2. 생물학적 정보

개인이 신체 상태 등을 설명하는 정보

예) 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DNA 등

2-3. 사회적 정보

제도적인 신원확인이나 보안접근 또는 일부 서비스나 재화의 제공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사회보장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등

2-4. 속성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혈액형, 신장, 체중, 사진, 지문, 장애 기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성을 규정하는 정보

2-5. 활동정보

- 가족, 출신 및 생활환경: 결혼, 이혼경력, 가족관계, 습관, 주거, 여행, 레저활동, 자선단체 가입 등
- 학력 및 교육: 학력, 출신학교, 성적 학교생활, 기능 자격 등
- 고용 및 경력: 취업, 사업경력, 구직·채용, 인사, 근태 근무평정기록 등
- 재산·신용·납세: 수입, 임금, 투자, 지출, 채무, 보험, 재산, 연금 보조금, 납세 사실 등
- 사회보장 및 행정서비스: 정부로부터의 급부, 급여, 면허, 특허, 인가 행정계약 등
- 기타: 기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2-6. 민감 정보

인종, 민족, 국적 정치적 성향, 종교, 노조 사회단체활동, 보건의료, 성생활, 행정처분사실, 전과, 수형기록, 병역사항, 기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3. 개인정보의 가치와 위험

3-1. 개인이 갖는 사적 가치

개인 입장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적 가치를 가진다.

예) 취미, 취향, 특기, 버릇 등

3-2. 개인의 사적 가치의 중요성

사회적 가치 혹은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는 입장에 반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개인정보를 개인적 가치로 인식하며, 사회질서 혹은 기업이윤이라는 명목 하에 프라이버시가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프라이버시는 다른 가치들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자유권 혹은 절대적 자유권이다.

II 개인정보보호 법률

1. 국제 규범과 개인정보보호 원칙

1-1. OECD 8원칙

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
-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② 정보내용의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이용 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확보

③ 수집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수집 이전 또는 당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명시
-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④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공개 금지

⑤ 안전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 조직적 ·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⑥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 이용 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확보

※ 정확성의 원칙이다.

⑦ 개인 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가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⑧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원칙 준수의무 및 책임

2.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률(주요내용)

2-1.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 가능하다

2-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3.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

2-4.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의 요구시 고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5.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자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2-6.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2-7.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법률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2-8.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 함.

2-9.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2-10.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1.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12.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권리행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I 개인정보 침해사례

1. 개인정보 침해 유형

1-1. 개인정보 침해유형 분류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모니터링/분석/이전,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및 부적절한 저장

1-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침해유형

- 수집단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하는 행위
- 이용 및 보유단계 : 수집 또는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
- 파기단계 :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철회 불응 및 수집 또는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기타 :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미조치

2. 개인정보 침해 사례 유형

- 시스템 계정관리 부적정
- P2P에 의한 정보누설
- 검색엔진에 의한 정보유출
-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
- PC 보안관리 소홀
- 컴퓨터 자료 미삭제 상태로 관리전환, 매각, 폐기
- 입출력 자료 폐기시 소각 또는 파쇄 소홀

IV.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